

경상북도 공고 제2019 - 788호

- 2019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계획 공고

2019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필기시험 합격자 : 1,080명 [붙임1]

※ 합격선 [붙임2] 참조

2 체력시험 계획

가. 기 간 : 2019. 5. 14.(화) ~ 5. 20.(월) * 세부일정 참조

※ 신분증, 응시표 및 필기구, 증명사진(3×4cm) 1매를 반드시 지참하여 시험당일 08:00까지 시험장소에 도착·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장 소 : 안동체육관(등록 : 보조경기장)

※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육사로 205(운흥동 소재) ☎ 054-850-4650

다.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라. 체력시험 세부일정 : [붙임3] 참조

마.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4] 참조

바. 측정방법 : [붙임5] 참조

※ 각 종목별 측정방법 등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함

사. 도핑테스트 실시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공무원 임용시험 도핑방지지침(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

2) 대 상 자 : 당일 체력시험 응시대상자 중 10% 이내 무작위 추첨에 의한 선정

3)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 : [붙임6] 참조

4)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붙임7] 참조

3

체력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체력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운동복, 운동화를 소지·착용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응시표, 필기구(흑색볼펜 등), 증명사진(3×4cm) 1매**를 지참하여 **08:00**까지 시험장소(안동체육관 보조경기장)에 도착·등록 하여야 합니다.
- 나. 응시자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신분증과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관리관의 신분확인 요구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다. 응시자는 시험시행본부에서 제공하는 시험용품 외 개인용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스파이크 등 특수기능성 운동화 착용을 금지합니다.
- 라. 응시자는 시험시행본부에서 안내하는 시험 진행 및 중식시간을 지켜야 하며,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체력시험 측정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험 중 본인의 건강상태·질환기타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바.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사. 체력시험 합격자 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50%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다만,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귀가하거나, 임의로 일부 종목에 미응시할 경우 중도 포기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본 공고문 및 시험당일 응시자 교육사항 미준수자 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자 등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체력시험 불합격자(중도 포기자 포함) 중 도핑테스트 대상자로 선정된 응시자도 도핑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한 경우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로 간주

자. 시험당일 시험장(안동체육관)내에는 응시자 등 시험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사정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를 해야 할 경우 시험장 맞은편 둔치주차장 이용

차. 응시자는 시험장 건물 내에서의 금연은 물론, 화장실 등 시험장내의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하고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일자·장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상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4 체력시험 기구 사전공개

가. 일 시 : 2019. 5. 13.(월) 11:00 ~ 16:00 (12:00 ~ 13:00 제외)

나. 장 소 : 안동체육관 보조경기장

다. 지 참 물 : 신분증, 응시표, 필기구

라. 공개기구 : 5종목

- 약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 공개당일 종목별 기구는 1인 2회까지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5 필기시험 성적 열람

가. 기 간

1) 필기시험 불합격자 : 2019. 4. 26.(금) ~ 5. 9.(목)[14일간]

2) 필기시험 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나. 열람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열람

- 로그인 > 합격 / 성적조회

※ 성적열람은 위 기간 중에만 가능하고 전화문의는 불가합니다.

6**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등**

가. 일 자 : 2019. 5. 27.(월)

나. 방 법 :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 시험정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54-880-6152) 및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 (<http://www.gb119.go.kr>) 질의응답(Q&A)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 2019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
필기시험 합격자(응시번호순)

▣ 소방(남) : 630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74100004	74100005	74100006	74100013
74100018	74100019	74100020	74100024
74100037	74100040	74100048	74100059
74100064	74100069	74100074	74100077
74100078	74100079	74100080	74100082
74100087	74100092	74100095	74100097
74100100	74100102	74100107	74100117
74100119	74100124	74100125	74100127
74100128	74100134	74100141	74100144
74100145	74100147	74100148	74100149
74100150	74100151	74100153	74100154
74100158	74100163	74100166	74100169
74100174	74100179	74100183	74100185
74100193	74100197	74100202	74100215
74100218	74100223	74100228	74100231
74100234	74100235	74100236	74100237
74100242	74100248	74100251	74100253
74100264	74100268	74100272	74100274
74100279	74100280	74100281	74100290
74100295	74100296	74100299	74100309
74100313	74100315	74100318	74100323
74100325	74100332	74100339	74100340

74100341	74100342	74100343	74100368
74100369	74100371	74100372	74100374
74100381	74100383	74100384	74100387
74100392	74100394	74100404	74100406
74100407	74100418	74100432	74100450
74100451	74100454	74100457	74100465
74100467	74100468	74100474	74100481
74100482	74100483	74100485	74100488
74100493	74100495	74100497	74100498
74100503	74100504	74100505	74100506
74100513	74100514	74100515	74100521
74100523	74100528	74100534	74100545
74100546	74100547	74100548	74100550
74100552	74100553	74100554	74100557
74100559	74100564	74100567	74100568
74100580	74100583	74100584	74100587
74100589	74100590	74100597	74100599
74100601	74100602	74100613	74100614
74100621	74100627	74100628	74100643
74100651	74100652	74100655	74100658
74100659	74100662	74100665	74100666
74100670	74100671	74100674	74100681
74100690	74100708	74100712	74100718
74100726	74100727	74100730	74100731
74100733	74100750	74100752	74100753
74100754	74100759	74100767	74100771
74100784	74100785	74100788	74100792
74100794	74100795	74100798	74100801

74100804	74100805	74100806	74100808
74100812	74100817	74100821	74100822
74100827	74100828	74100831	74100832
74100836	74100839	74100846	74100853
74100855	74100858	74100863	74100869
74100870	74100873	74100875	74100878
74100879	74100883	74100884	74100887
74100888	74100891	74100897	74100898
74100899	74100900	74100901	74100908
74100912	74100913	74100915	74100916
74100923	74100926	74100928	74100930
74100931	74100934	74100939	74100941
74100943	74100946	74100961	74100962
74100973	74100976	74100978	74100980
74100983	74100985	74100987	74100988
74100994	74100996	74101000	74101002
74101004	74101007	74101011	74101015
74101016	74101017	74101018	74101020
74101024	74101025	74101027	74101028
74101030	74101045	74101049	74101055
74101060	74101063	74101068	74101081
74101088	74101095	74101099	74101108
74101112	74101121	74101122	74101128
74101131	74101136	74101138	74101140
74101143	74101144	74101146	74101154
74101157	74101158	74101163	74101164
74101172	74101183	74101189	74101191

74101192	74101194	74101197	74101199
74101206	74101208	74101210	74101223
74101225	74101226	74101228	74101229
74101248	74101249	74101250	74101258
74101267	74101270	74101272	74101276
74101278	74101287	74101289	74101290
74101297	74101301	74101302	74101305
74101306	74101311	74101321	74101324
74101333	74101334	74101335	74101348
74101354	74101360	74101363	74101364
74101365	74101368	74101369	74101375
74101379	74101389	74101390	74101396
74101404	74101405	74101408	74101420
74101427	74101435	74101440	74101441
74101445	74101450	74101451	74101452
74101457	74101458	74101460	74101464
74101465	74101471	74101480	74101484
74101487	74101495	74101497	74101499
74101501	74101502	74101507	74101509
74101510	74101515	74101519	74101520
74101521	74101525	74101528	74101537
74101557	74101559	74101560	74101567
74101573	74101579	74101581	74101584
74101586	74101591	74101598	74101599
74101600	74101601	74101605	74101611
74101619	74101623	74101626	74101632
74101634	74101635	74101636	74101637
74101638	74101640	74101641	74101652

74101654	74101658	74101660	74101664
74101668	74101669	74101670	74101678
74101682	74101684	74101687	74101697
74101707	74101713	74101718	74101722
74101731	74101734	74101740	74101741
74101742	74101743	74101747	74101748
74101750	74101755	74101756	74101758
74101761	74101763	74101765	74101770
74101779	74101781	74101787	74101790
74101791	74101792	74101793	74101798
74101800	74101801	74101807	74101810
74101817	74101819	74101827	74101828
74101832	74101834	74101836	74101840
74101843	74101844	74101847	74101848
74101849	74101852	74101855	74101856
74101857	74101862	74101867	74101869
74101872	74101877	74101878	74101881
74101882	74101883	74101887	74101890
74101895	74101899	74101909	74101910
74101919	74101921	74101927	74101931
74101933	74101937	74101942	74101958
74101961	74101964	74101966	74101975
74101983	74101984	74101989	74101995
74102006	74102010	74102015	74102018
74102021	74102028	74102029	74102030
74102035	74102043	74102047	74102051
74102060	74102074	74102075	74102083

74102090	74102093	74102107	74102118
74102120	74102121	74102125	74102133
74102134	74102136	74102153	74102159
74102160	74102161	74102162	74102164
74102169	74102177	74102186	74102189
74102190	74102191	74102194	74102195
74102196	74102197	74102199	74102200
74102201	74102211	74102214	74102217
74102220	74102222	74102224	74102228
74102233	74102235	74102237	74102239
74102240	74102243	74102244	74102248
74102259	74102263	74102264	74102266
74102267	74102270	74102275	74102277
74102282	74102283	74102284	74102285
74102291	74102292	74102295	74102296
74102297	74102302	74102307	74102308
74102315	74102316	74102317	74102318
74102322	74102323	74102329	74102330
74102333	74102336	74102340	74102344
74102348	74102349	74102359	74102360
74102361	74102372	74102376	74102377
74102378	74102380	74102382	74102406
74102409	74102414	74102416	74102424
74102425	74102427	74102431	74102434
74102445	74102448	74102451	74102455
74102456	74102462	- 이상 630명 -	

▣ 소방(여) : 80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74200002	74200005	74200010	74200016
74200029	74200030	74200035	74200040
74200043	74200044	74200057	74200059
74200061	74200062	74200063	74200073
74200075	74200079	74200083	74200092
74200102	74200110	74200122	74200123
74200130	74200138	74200154	74200155
74200163	74200168	74200170	74200180
74200187	74200191	74200196	74200200
74200202	74200204	74200209	74200213
74200218	74200220	74200221	74200244
74200249	74200260	74200265	74200270
74200275	74200276	74200277	74200278
74200281	74200288	74200292	74200300
74200301	74200311	74200320	74200323
74200324	74200327	74200331	74200332
74200343	74200352	74200368	74200371
74200372	74200374	74200375	74200378
74200382	74200387	74200392	74200393
74200396	74200397	74200405	74200408

- 이상 80명 -

-

▣ 구조(남) : 29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79100009	79100013	79100017	79100019

79100029	79100032	79100038	79100041
79100043	79100044	79100052	79100063
79100067	79100075	79100077	79100078
79100079	79100083	79100089	79100092
79100097	79100099	79100104	79100107
79100110	79100116	79100123	79100131
79100136	- 이상 29명 -		

▣ 구급(남) : 95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79200007	79200015	79200023	79200024
79200026	79200029	79200033	79200038
79200039	79200040	79200046	79200048
79200062	79200063	79200065	79200067
79200075	79200086	79200088	79200090
79200093	79200101	79200105	79200107
79200111	79200113	79200121	79200124
79200128	79200130	79200142	79200144
79200147	79200151	79200159	79200164
79200170	79200171	79200177	79200188
79200189	79200193	79200197	79200198
79200199	79200202	79200204	79200205
79200207	79200213	79200218	79200224
79200226	79200228	79200230	79200231
79200240	79200246	79200255	79200264
79200265	79200281	79200283	79200290
79200292	79200297	79200300	79200302

79200303	79200306	79200308	79200311
79200320	79200332	79200337	79200338
79200340	79200342	79200344	79200346
79200348	79200351	79200352	79200359
79200362	79200369	79200373	79200378
79200379	79200380	79200383	79200386
79200389	79200391	79200394	- 이상 95명 -

▣ 구급(여) : 148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79210001	79210004	79210030	79210031
79210040	79210060	79210061	79210063
79210075	79210080	79210103	79210116
79210117	79210118	79210120	79210130
79210137	79210142	79210143	79210151
79210163	79210167	79210173	79210174
79210182	79210187	79210188	79210190
79210202	79210204	79210219	79210223
79210227	79210230	79210248	79210255
79210267	79210269	79210270	79210271
79210274	79210275	79210283	79210284
79210319	79210330	79210340	79210341
79210342	79210346	79210350	79210354
79210358	79210361	79210366	79210368
79210373	79210379	79210390	79210392
79210403	79210405	79210415	79210419
79210423	79210431	79210439	79210440

79210447	79210455	79210460	79210464
79210472	79210492	79210493	79210500
79210510	79210512	79210514	79210524
79210529	79210532	79210537	79210539
79210543	79210547	79210548	79210551
79210555	79210561	79210562	79210569
79210575	79210584	79210589	79210595
79210597	79210600	79210601	79210615
79210617	79210631	79210641	79210647
79210651	79210655	79210660	79210661
79210667	79210673	79210674	79210675
79210679	79210680	79210691	79210715
79210722	79210727	79210746	79210750
79210752	79210761	79210762	79210763
79210764	79210770	79210771	79210777
79210793	79210797	79210808	79210812
79210813	79210818	79210829	79210834
79210837	79210853	79210858	79210861
79210862	79210869	79210872	79210873
79210874	79210876	79210877	79210880

- 이상 148명 -

▣ 차량정비(남) : 2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79300011

79300017

- 이상 2명 -

▣ 소방특별조사 : 3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79400007	79400013	79400016	- 이상 3명 -

▣ 화재조사(화학) : 4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79500003	79500004	79500012	79500015

- 이상 4명 -

▣ 화재조사(건축) : 1명

응시번호	
79600002	- 이상 1명 -

▣ 응급구조학과(남) : 20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79700015	79700020	79700025	79700047
79700049	79700051	79700062	79700075
79700084	79700086	79700097	79700099
79700105	79700108	79700125	79700150
79700168	79700170	79700171	79700173

- 이상 20명 -

▣ 응급구조학과(여) : 4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79710002	79710013	79710019	79710022

- 이상 4명 -

▣ 의무소방전역 : 10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79800002	79800008	79800013	79800021
79800036	79800043	79800051	79800053
79800058	79800062	- 이상 10명 -	

▣ 소방전공학과(남) : 42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79900004	79900036	79900041	79900047
79900053	79900056	79900057	79900061
79900063	79900064	79900066	79900079
79900092	79900101	79900122	79900124
79900128	79900129	79900149	79900171
79900175	79900182	79900185	79900202
79900203	79900207	79900212	79900248
79900253	79900257	79900262	79900305
79900311	79900331	79900344	79900355
79900357	79900371	79900403	79900416
79900418	79900426	- 이상 42명 -	

▣ 소방전공학과(여) : 12명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79910001	79910003	79910007	79910017
79910018	79910022	79910076	79910077
79910111	79910117	79910139	79910140
- 이상 12명 -			

[붙임2]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현황[합격선]

구 분	채용 계급	채용분야		선발인원	필기시험 합격인원	합격선 최 저	비고	
합 계		14개 분야		684	1,080			
공개 경쟁 채용	지 방 소방사	일반소방	남자	420	630	331.94 (조정점수)		
			여자	40	80	369.98 (조정점수)		
경력 경쟁 채용	지 방 소방사	구 조	남자	20	29	61.66		
			여자					
		구 급	남자	60	95	70.00		
			여자	90	148	80.00		
		차량정비		남자	3	2	76.66	
		소방특별조사		양성	3	3	61.66	
		화재 조사	화학	양성	3	4	76.66	
			건축	양성	3	1	66.66	
		응급구조학과		남자	10	20	68.33	
				여자	2	4	63.33	
		의무소방전역		남자	5	10	73.33	
		소방전공학과		남자	20	42	80.00	
여자	5			12	90.00			

※ 합격선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50명 이상은 1.5배수, 50명 미만은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붙임3]

- 2019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
체 력 시 험 세 부 일 정

시험일	채용분야	인 원		대 상 자	비고
5. 14.(화)	소방(남)	210명		74100004 ~ 74100828	
5. 15.(수)	소방(남)	210명		74100831 ~ 74101652	
5. 16.(목)	소방(남)	230명	210	74101654 ~ 74102462	
	구조(남)		20	79100009 ~ 79100092	
5. 17.(금)	소방(여)	228명	80	74200002 ~ 74200408	
	구급(여)		148	79210001 ~ 79210880	
5. 20.(월)	구조(남)	202명	9	79100097 ~ 79100136	
	구급(남)		95	79200007 ~ 79200394	
	차량정비(남)		2	79300011 ~ 79300017	
	소방특별조사		3	79400007 ~ 79400016	
	화재조사(화학)		4	79500003 ~ 79500015	
	화재조사(건축)		1	79600002	
	소방전공학과(남)		42	79900004 ~ 79900426	
	소방전공학과(여)		12	79910001 ~ 79910140	
	응급구조학과(남)		20	79700015 ~ 79700173	
	응급구조학과(여)		4	79710002 ~ 79710022	
	의무소방전역		10	79800002 ~ 79800062	

[붙임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 48.0	48.1 ~ 50.0	50.1 ~ 51.5	51.6 ~ 52.8	52.9 ~ 54.1	54.2 ~ 55.4	55.5 ~ 56.7	56.8 ~ 58.0	58.1 ~ 59.9	60.0 이상
	여	27.6 ~ 28.9	29.0 ~ 30.2	30.3 ~ 31.1	31.2 ~ 31.9	32.0 ~ 32.9	33.0 ~ 33.7	33.8 ~ 34.6	34.7 ~ 35.7	35.8 ~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 153	154 ~ 158	159 ~ 165	166 ~ 169	170 ~ 173	174 ~ 178	179 ~ 185	186 ~ 194	195 ~ 205	206 이상
	여	85 ~ 91	92 ~ 95	96 ~ 98	99 ~ 101	102 ~ 104	105 ~ 107	108 ~ 110	111 ~ 114	115 ~ 120	121 이상
앞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 17.3	17.4 ~ 18.3	18.4 ~ 19.8	19.9 ~ 20.6	20.7 ~ 21.6	21.7 ~ 22.4	22.5 ~ 23.2	23.3 ~ 24.2	24.3 ~ 25.7	25.8 이상
	여	19.5 ~ 20.6	20.7 ~ 21.6	21.7 ~ 22.6	22.7 ~ 23.4	23.5 ~ 24.8	24.9 ~ 25.4	25.5 ~ 26.1	26.2 ~ 26.7	26.8 ~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 231	232 ~ 236	237 ~ 239	240 ~ 242	243 ~ 245	246 ~ 249	250 ~ 254	255 ~ 257	258 ~ 262	263 이상
	여	160 ~ 164	165 ~ 168	169 ~ 172	173 ~ 176	177 ~ 180	181 ~ 184	185 ~ 188	189 ~ 193	194 ~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 59	60 ~ 61	62 ~ 63	64 ~ 67	68 ~ 71	72 ~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 30	31	32 ~ 33	34 ~ 36	37 ~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붙임5]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악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똑바로 선 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중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 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시험 도핑방지지침(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붙임7)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 시료는 응시자의 소변으로 하고, 시료수집책임관 관리하에 소변 채취 통에 90ml이상이 되도록 수집한다.
- 응시자는 시료채취 용기를 직접 선택한 후, 시료수집책임관이 A시료병에 60ml, B시료병에 30ml의 양으로 나누어 넣은 뒤 밀봉하여 응시자가 직접 확인합니다.
- 응시자가 시료채취 용기를 선택한 그 시점부터는 시료채취 용기는 응시자 또는 시료수집책임관 입회하에 다룬다
- 시료채취용기의 관리번호와 성명, 응시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등 개인식별 번호는 관련 서류에 기재하고, 응시자가 확인·서명을 한다.
- 시료수집책임관은 소변시료가 분석하기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채취용기에 남은 소변의 비중을 확인하고, 적정비중(굴절계 1.005, 시료스틱 1.01)이하인 경우에 응시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보관운송책임관이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된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정상복도에 서면으로 통보되며 분석결과 비정상(양성)이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치료 목적 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의견제출시)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한다

- (B시료분석 요청 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B시료 분석결과가 A시료의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합격)으로 최종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양성)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치료목적 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 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붙임 치료목적사용 면책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붙임8)
(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 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붙임기]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I. 금지약물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methenolone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 ▶pentazocine ▶pethidine

II.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섞기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붙임8]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응급

기간(주/월) _____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 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전자 우

편: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 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 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붙임10]

안동시 실내체육관 위치도



○ 주 소 : 경상북도 안동시 육사로 205(운흥동 소재) (☎ 054-850-4650)

○ 교통편

- 시내버스 : 안동시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에서 교통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택 시

- 안동역에서 7분 이내 도착
- 안동터미널에서 25분 이내 도착